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4개 과·담당관을 신설하고 인력 1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58명, 6급 44명, 7급 2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0명(5급 1명, 6급 2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3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증원(제4조제1항 및 제2

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제16조의2, 별표 2 및 별표 4)

- 1) 사무처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 2)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함.
- 3) 시장감시국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독과점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4명(5급 9명, 6급 5명) 및 신속한 약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4) 카르텔조사국에 건설·에너지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입찰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함.

5)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6명),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인력 증원에 따른 원활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비위행위 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상임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별표 3 및 별표 4)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부

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0명(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4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4명(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함.

라. 공정거래위원회 한시조직 신설(제26조 및 별표 6)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기업집단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경제분석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3.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제1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제22조제2항 후단 중 “50명”을 “54명”으로 한다.

제6장(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조직

제26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599”를 “735”로 하고, 일반직 계 “596”을 “73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3”을 “14”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4”로, 3급 또는 4급 이하 “575”를 “709”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를 각각 “284”로, 3급 또는 4급 이하 “213”을 “28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 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601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598
고위공무원단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4
3급 또는 4급 이하	576
전문경력관	5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5조제1항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조사관리관	1명
2) 심판관리관 1개 담당관	10명
3) 조사관리관 1개 담당관	10명
4) 조사관리관 1개 담당관 (조사교육담당관)	11명
5) 시장감시국 1개 과	4명
6) 시장감시국 1개 과 (표시광고감시과)	6명
7) 카르텔조사국 1개 과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	14명
8)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정책관등	1명
9)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과	12명
1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1개 과	8명
11) 경제분석국	1명
12) 경제분석국 1개 과 (제량경제분석과)	10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13명
2)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4명
3)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 업무 수행	16명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1개 과 (제조하도급과)	8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불공정 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 처리 업무 수행	45명

[별표 6]

공정거래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4항 관련)

중점조사기획단(존속기한: 2028년 9월 30일)

총계	33
일반직 계	33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9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u>4명</u> 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11명</u> ----- ----- <u>5명</u>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u>3명</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 ----- <u>4명</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 경쟁정책국 · 소비자정책국 · 시장감시국 · 카르텔조사국 · <u>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u> 을 둔다.	제6조(하부조직) ① ----- ----- ----- ----- <u>기업집단감시국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경제분석국</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관리관) ① (생략)	제9조(조사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u>

<u>3. ~ 5. (생 략)</u> <u>6.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 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 행의 확인</u> <u>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u> <u>8. · 9. (생 략)</u> 제12조(경쟁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10. (생 략) <u>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u> 12. ~ 35. (생 략) <u><신 설></u>	<u>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u> <u><삭 제></u> <u><삭 제></u> <u>7. · 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u> 제12조(경쟁정책국)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12. ~ 35.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 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u> <u>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u>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u> <u>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u>
---	--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분석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54명 -----

 -----.

<신 설>

<신 설>

제6장 한시조직

- 제26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
- ②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

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9</u>	<u>735</u>	+136
•	•	•	
•	•	•	
일반직 계	<u>596</u>	<u>732</u>	+136
고위공무원단	<u>13</u>	<u>14</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 제	<u>3</u>	<u>4</u>	+1
3급 또는 4급 이하	<u>575</u>	<u>709</u>	+134
•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14</u>	<u>284</u>	+70
일반직 계	<u>214</u>	<u>284</u>	+70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13</u>	<u>283</u>	+7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7